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695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3. 3. 29.
4. 회부일자 : 2023. 4. 3.

II. 제안이유

- 2023. 7. 1.자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1. 기획조정실 분장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및 '행정정보화 기획'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7조)
2. 교육정책국 분장사무 중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안 제8조)
3. 교육행정국 분장사무에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4.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6절, 제21조~제23조)
5. 신청사 건립 전담기구의 존속기간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 : (별첨 6)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3. 협의 :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4.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3. 3. 22. ~ 3. 26.) : 의견 없음(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통보 확인서(별첨 4)
- 학생인권영향평가 : 검토 의견서(별첨 5)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 번호 제695호로 제출되어 2023년 4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각 부서별 중복 또는 분산된 기능을 이관·통합하기 위해 기존 기구를 개편 및 재배치하고 일부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출 경위

-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2022년 10월 17일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10일 개최된 5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이유로 해당 안건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종전 제출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기획조정실 분장사무’를 일부 수정하고,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 2023년 3월 1일에서 2023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개정 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2023년 7월 1일자로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실·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¹⁾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교육혁신과’를 ‘(가칭)디지털·AI미래교육과’로, ‘학교보건진흥원’을 ‘보건안전진흥원’으로 각각 명칭 및 기능을 개편하고, ‘(가칭)안전총괄담당관’과 ‘(가칭)교원·사학정책과’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국 내에 ‘(가칭)청사이전추진단’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하는 한시기구로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개편은 교육감이 법령²⁾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조직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인바³⁾,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주요 조문에 대한 검토

1)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안 제7조)

- 안 제7조는 제10호와 제14호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육감 3기 조직재편 추진계획 변경(안)’, 행정관리담당관-4411.,2023.3.21.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실·국 등 기구의 설치) ①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지방의회는 교육감의 지방교육행정기구 설치권한과 조직편성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직접 교육행정기관을 설치·폐지하거나 교육감이 조례안으로써 제안한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의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 등 참조).

- 현행 조례 제7조제10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의 소관 사무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 이는 현재 교육청 기획조정실 내 ‘정책·안전기획관’의 기능을 ‘정책기획’과 ‘안전관리’로 분리하고, 이 중 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전담하는 ‘(가칭)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재배치·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1] (가칭)안전총괄담당관 신설 및 부교육감 직속으로 배치



- 이와 같은 안전총괄담당관의 신설은 정책과 안전이라는 이질적 사무를 정책·안전기획관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조직설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안전총괄담당관의 신설은 안전사고 등 교육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고, 교육현장의 사고예방 및 각종

재해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전총괄담당관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재편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부교육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으로, 안전관리와 보건관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부교육감 직속으로 관찰·통제하게 함으로써 긴급한 사고 현장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속한 의사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현재 정책·안전기획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형 3급(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있는바,

기존의 직급체계를 개편해야 함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은 부교육감 직속인 총무과장(3급), 감사관(3급)과의 직급체계의 형평성 및 교육 현장에서 안전 총괄 역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에 합당한 직급의 개편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정책국 소관 사무(안 제8조)

- 안 제8조제5호는 안 제7조제14호에서 삭제한 ‘행정정보화 사무’를 기존의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과 통합하여 교육정책국의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는 각 부서별,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 등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정보 및 행정정보에 대한 기획 기능을 통합함과 동시에 정보화 기능을 하나의 전담조직에서 집중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교육정책국 내 ‘교육혁신과’의 분장사무 중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을 제외한 사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중등교육과의 ‘원격교육’, 행정관리담당관의 ‘정보기획’, 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 관련 업무 등을 통합하여 부서를 재편하고, 부서명을 ‘교육혁신과’에서 ‘(가칭)디지털·AI 미래교육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와 같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추어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업무관리에 대한 일원화 및 교육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⁴⁾.

[표-2] (가칭)디지털·AI미래교육과 재편

교육정책국				기획조정실
교육혁신과 (5담당)	유아교육과 (3담당)	초등교육과 (4담당)	중등교육과 (8담당)	참여협력담당관 (3담당)
학교혁신기획·운영	유아교육과정·인사	초등교육과정	중학교교육과정	지역사회협력
고교체제·자율학교	유아생활교육	기초학력·방과후학교	고교교육과정	학부모·시민협력
인공지능·창의융합교육	유아교육지원	초등인사	원격교육	교육복지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초등교육·돌봄지원	학력평가	
교육혁신지원			교수학습·독서·외국어교육	
			중등인사	
			사립교원인사관리	
			교원임용관리	



4) 앞의 연구용역, 232쪽
 “~(생략)~각 분야·부서별 미래교육 기능을 종합·조정하고, 서울교육이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을 기획·총괄·조정하는 서울 미래교육의 컨트롤 타워 부서로 기존 교육혁신과를 (가칭)미래교육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함.”

교육정책국				기획조정실
(가칭) 디지털·미래교육과 (6담당) (재편, 명칭변경)	유아교육과 (3담당)	초등교육과 (5담당)	중등교육과 (8담당)	참여협력담당관 (4담당)
(가칭) 미래교육기획 (재편, 인공지능+원격)	유아교육과정·인사	초등교육과정	중학교교육과정	지역사회협력
(가칭) 창의융합교육 (분리)	유아생활교육	(가칭) 학교혁신기획 (이관, 前 교육혁신과)	고교교육과정	생태·환경·에너지교육 (이관, 前 교육혁신과)
(가칭) 디지털기획 (이관, 前 행정관리담당관)	유아교육지원	기초학력·방과후학교	고교체제·자율학교 (이관, 前 교육혁신과)	학부모·시민협력
(가칭) 디지털개발 (신설)		초등인사	학력평가	교육복지
(가칭) 디지털보호 (이관·신설, 前 연구정보원)		초등교육·돌봄지원	교수학습·독서·외국어교육	
(가칭) 미래교육지원 (명칭변경)			중등인사	
			사립교원인사관리	
			교원임용관리	

○ 다만 가칭이라고는 하나 행정부서의 명칭에 외래어를 사용하고 직관성이 떨어지는 부서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 시민 등의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교육행정국 소관 사무(안 제9조, 안 부칙 제2조)

○ 안 제9조제10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이전 등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교육행정국 사무로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은 규칙 제10조제5항제20호⁵⁾에 따라 ‘교육행정국-교육시설안전과(시설개발팀)’에서 담

5)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교육행정국) ① ~ ④ (생략)
 ⑤ 교육시설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당하고 있는바,

청사이전은 예산확보 및 공사 진행·관리 및 각종 행정절차이행, 이전 준비 등 각종 사무의 처리가 필요한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개발팀은 교육시설 안전과 학교내 체육관, 급식시설 등 증축이라는 고유 사무를 가지고 있어 신청사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더욱이 타 자치단체 및 기관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대나 전담조직 신설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청사이전기획 및 공사, 스마트오피스 등의 사업을 담당할 ‘(가칭)청사이전추진단’을 신청사 설립 및 이전⁶⁾이 마무리되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안 부칙 제 2조)에 있습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시기구의 설치는 조례 위임사항⁷⁾으로 조례에 신청사 건립에

1. ~ 19. (생략)

20. 신청사 건립 등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2.18.>

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사업부서: 교육시설안전과)

○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27(구 수도여고 부지)

○ 부지면적: 13,214.2㎡

○ 건축규모: 39,937㎡(지하 3층, 지상 6층)

○ 총사업비: 129,900,000천원(보통교부금 33,072,821천원 포함)

○ 추진계획(※ 신청사 건립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사추진: 2022년 1월 ~ 2024년 11월

- 설계용역 추진(사후 설계): 2022년 12월 ~ 2024년 11월

- 신청사 이전: 2024년 12월 ~ 2025년 2월

7) 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야 하는바,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제10호의 신설과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을 규정한 안 부칙 제2조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의 명확한 사무 분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한시기구 존속기간(안 부칙 제2조, 2년 8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3] (가칭)청사이전추진단 신설

교육행정국				
학교지원과 (6담당)	교육재정과 (3담당)	교육시설안전과 (4담당)	미래학교추진단 (3담당)	(가칭)청사이전추진단 (3담당) (신설)
학교설립1	회계관리	시설기획	미래학교기획	(가칭)청사이전기획 (신설)
학교설립2	계약관리	시설개발	미래학교개발	(가칭)청사시설공사 (신설)
학생배정	재산관리	시설관리	미래학교민간투자	(가칭)스마트오피스 (신설)
교육공간총괄		공공건축지원센터		
학교법인				
사학재정				

4)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명칭 변경(안 제6절 이하)

- 동 개정조례안 제6절의 명칭과 제21조부터 제23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을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학교보건진흥원은 2019년 조직개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무상급식 확대 등에 따라 급식 관련 업무를 추가한데 이어, 2022년도에는 학생 건강과 관련한 전반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 이러한 학교보건진흥원의 기능 강화는 학생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으로 행정수요를 발생시키는 보건·환경·급식분야의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속기관은 지속적으로 ‘과 단위 부서’의 신설과 분리,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여기에 더해 서울시교육청은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집행 업무를 학교보건진흥원 내 산업안전보건과에 부여함으로써 재난·안전분야에 대해 ‘(가칭)안전총괄담당관-학교보건진흥원-교육지원청’으로 이어지는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강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 따라서 ‘보건안전진흥원’으로의 명칭변경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기조와 학교보건진흥원의 역할 확대에 따른 것인바, 보건이라는 학교보건진흥원의 주요 업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강화될 재난·안전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담아낸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정진국 2180-8265
----------	------------------	-------	------------------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교육자치법)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841호, 2022. 4. 20., 타법개정]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 4. 7., 일부개정]

제7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